

- (2)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를 통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 등을 줄이고 식품위생수준 제고를 기대함.

타.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(안 제95조 신설)

- (1)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(2) 영업신고증, 허가증, 종업원 명부 및 식품거래 기록 보관 의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.
- (3) 행정형벌을 합리화하여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파. 신고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

- (1) 식품품목제조보고서, 품목제조보고서 사항변경보고서, 유통기간연장보고서 등이 외부로 유출됨으로 인한 영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.
- (2) 서식에 “주민등록번호”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함.
- (3)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사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21호, 2009. 4. 27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하였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2품목을 민원 편의를 위하여 추가하고, 더불어 포자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으로 확립된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신설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.

### □ 시행령 주요내용

가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사용하는 과

산화수소제품 및 과산화초산제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

- (1) 정의, 성분규격, 살균소독력시험,

사용기준, 보존기준 설정

나. 일반시험법 중 살균소독력시험법에  
포자현탁액시험법 추가 신설

- (1) 포자현탁액시험법 : 미생물 포자  
수의 감소정도로 살균력을 측정하  
는 시험방법

다. 에탄올 등 7종 살균소독제의 명칭  
개정 및 성상 삭제

- (1) 에탄올, 염화-N-데실-N,N-디  
메틸-1-데칸 아미늄, 염화알킬

(C<sub>12</sub>-C<sub>18</sub>) 벤질디메틸 암모늄, 이  
염화 이소시아눌산 나트륨, 차아  
염소산나트륨, 차아 염소산수, 폴  
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 하이드  
로 클로라이드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 
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조  
하시기 바랍니다.

##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-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제2009-125호, 2009. 5. 04 -

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규정 상 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가공품 중 일부가 축산물로 분류할 세부 유형이 없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축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, 축산물운반업의 정의를 냉장·냉동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으로 한정하여 영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‘기타 식육가공품’, ‘기타 알가공품’  
신설

- (1) 주원료가 축산물임에도 불구하고  
죽발, 삶은 계란 등을 축산물가공  
처리법령 상 축산물로 분류할 세  
부유형이 없기 때문에 식육가공업

자·알가공업자는 이를 제조하려  
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별도로  
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  
고,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  
는 경우에도 검역(농림수산식품  
부)과 수입신고(식약청)를 이원적  
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자의  
이중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